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52
----------	-------

발의연월일 : 2018. 12. 31.
발의자 :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이은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 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